

예산총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4,480,171	13,034,405
일반회계	417,987,277	12,539,618
특별회계	16,492,894	494,787
기타특별회계	16,492,894	494,78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8,264	7,448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89,596	2,688
수질개선 특별회계	60,089	1,80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547,000	16,41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02,000	9,060
주차장 특별회계	2,105,000	63,150
기반시설 특별회계	274,008	8,2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2,866,937	386,00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65,83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해대책 및 복구비